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 강 원 도 지 사

###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 2020.4.1.)됨에 따라 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현장부족인력 확충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구 분	정원(명)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총 계	6,115	6,436	321	
본청(소방본부 포함)	1,651	1,683	32	
의회사무처	92	92	-	
직속기관	3,752	4,038	286	
출장소	102	102	-	
경제자유구역청	59	59	-	
사업소	415	417	2	
합의제행정기관	44	45	1	

나. 강원도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구 분	정원(명)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총 계	6,115	6,436	321	
정무직	1	1	-	
일반직·별정직	2,139	2,139	-	
연구직	212	212	-	
지도직	29	29	-	
소방공무원	3,687	4,008	321	
교육공무원	47	47	-	

\*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20 ~ '24년) : 129,223백만원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5
- 팩 스 : 033-249-4013
- 이메일 : [cjm2383@korea.kr](mailto:cjm2383@korea.kr)

강원도 규칙 제 호

##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p>